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96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피고, 항소인 ○○광역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구합20346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2,468m²"를 "2,486m²"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제8행부터 밑에서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2020.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사건 외 부동산 총 11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일괄 처리사항으로 표기하였다.

6) 원고는 2020. 12. 24.부터 2021. 4. 26.까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 8회에 걸쳐 보완 요청을 받았다.



○ 1차 보완요구(2020. 12. 24.)

(보완 마감일: 2021. 1. 25. 보완 완료일: 2021. 1. 29.)

- 가. 노인복지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요함
- 나. 건축물의 범죄예방 검토 자료 제출
- 다. 단열재 두께 재검토
- 라. 난간벽 등의 손잡이 기준 검토 근거 자료 제출
- 마. 소방관 진입창 설치 검토 자료 제출

○ 2차 보완요구(2021. 1. 29.)

(당초 보완 마감일: 2021. 3. 5. 변경된 보완 마감일¹⁾: 2021. 3. 25. 보완 완료일: 2021. 3. 25.)

[개발행위허가 관련] 최대경사도 산정 자료 제출 요청

[소방협의 관련]

- 소방시설 설계도서 등 보완
 - 층별 무창층 계산서 첨부
 - 무창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인 층은 제연설비 설치
 - 소방시설 내진관련 계산서 및 도면 제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차도와 분리하여 유효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의 접근로 설치할 것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구역 바닥 표기 및 안내표지판 수정할 것
- 내부시설
 - 출입구(문): 출입구 통과 유효 폭 0.9m 이상 및 측면활동공간 0.6m 이상 확보, 실명점자 표지판 설치할 것
 - 복도: 복도 손잡이 설치할 것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출입문 측면활동공간 0.6m 이상 및 내부 통로 1.2m 이상 확보할 것
- 장애인 대변기 회전식 손잡이 높이 및 등받이 형태 수정, 비상벨 설치할 것

○ 3 내지 9차 (경미)보완요구(2022. 3. 30. ~ 2021. 5. 6.)

(보완 마감일: 요청일로부터 각 4일 이내, 최종 보완 완료일: 2021. 5. 10.)

- 보완내역 생략

7) 원고는 2021. 5. 10.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1. 5. 11. 주식회사 P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7면 밑에서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1) 원고는 2021. 3. 25. 피고에게 위 2021. 1. 29.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보완요구의 보완 마감일을 2021. 3. 25.로 변경하였다.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밑에서 제4행 "기재" 뒤에 "당심 증인 S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즉,"부터 제10행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즉, 당초 1차 기획설계안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F 및 D 토지의 경우 이 사건 도로부지로 인하여 다른 토지들과 분단이 되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 데,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여졌고, 그에 따라 원고는 2차 기획설계안과 같이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그와 같은 원고의 선택은 원고 스스로에게도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주거 쾌적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어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보건복지증진이라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예상하였는바,"부터 제10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예정하였고, 그 설계를 담당하였던 당심 증인 S는 '2차 기획설계안의 경우 처음부터 재설계 개념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1차 기획설계안과) 거의 비슷하게 소요기간이 진행됐다. 요양원 건물 다수 설계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건물 설계를 완성하는 데 최소 5~6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 이후부터 설계변경을 거쳐 2020. 12. 18.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가량이 소요된 것은 통상적인 요양원 건축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건



립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이 실효된 2020. 7. 1.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21. 6. 1.은 1년 이내이므로, 만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의 실효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차 설계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 2014.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12.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였으며, 2020. 6.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도로목록 공고를 거쳐 2020. 7. 1. 이 사건 고시가 공고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부지가 포함된 월평59 도로가 실효예정이라는 공고(을 제4호증)가 1차 설계계약 체결 이후인 2020. 6. 1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점, 담당 공무원 역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이 해제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최초 설계 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이 해제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처음부터 그 실효를 전제로 일응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여 1차 기획설계안과 같은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2차 기획설계안에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층수와 건축면적이 상당히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부지 및 F 및 D 토지 활용 방식의 변화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건물의 배치, 방향, 토지활용 등의 근본적 변경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층수 및 건축면적 변경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한 설계 변경 과정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고시가 없었더라도 그와 같은 층수 및 건축면적 설계변경의 필요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21. 6. 1. 이후에도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착공 이후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1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이후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2020. 12. 18.부터 2021. 5. 10.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충실히 보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소방시설 설치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한 2차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에는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보완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신청과정에서의 준비가 부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준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미달하는 정도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이후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5개월이라는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된 데에는 코로나19 상황과 허가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있다.

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과세 형평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취



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착공에 이른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4개월을 경과한 시점으로 1년을 도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

판사 이○○

판사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별지

이 사건 부동산 목록

1. ○○ ○구 F 대 89m²
2. ○○ ○구 G 대 54m²
3. ○○ ○구 H 대 59m²
4. ○○ ○구 D 대 653m²
5. ○○ ○구 I 대 253m²
6. ○○ ○구 J 대 247m²
7. ○○ ○구 K 대 582m²
8. ○○ ○구 L 대 36m²
9. ○○ ○구 M 대 68m²
10. ○○ ○구 N 대 31m² 끝.